의 안 번 호	제 44 호
의결 연월일	2020. 5. 18.

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5월 08일 서 원 의원 외 4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5월 08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5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서원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으나 현행 『논산시 상수도 급수조례』 제40조제1항제4호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에는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규정 되어 있음.

○ 이를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의 경보발령 때에도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(안 제40조제1항)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의 경보발령 때에도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(안 제40조제1항)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